고흥군의회 공고 제2021-32호

「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#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

## 1. 제안이유

○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‘22. 1. 13. 시행) 및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규정한 「지방공무원법」 일부개정(’22. 1. 13. 시행)에 따라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의장 및 사무과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2조, 제3조)

○ 직무대리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○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의 위탁에 대한 근거 조항(안 제9조)

## 3. 자치법규안: 별도 붙임

4. **예고기간:** 2021. 12. 22.~12. 27.(5일간)

5. **의견제출**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2. 27.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(3) 그 밖의 참고 의견 등

나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(1) 일반우편: (59542)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

(2) 전화: 061-830-6065, FAX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#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고흥군의회 및 고흥군의회 사무과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법정대리)** ① 고흥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결원, 출장, 그 밖에 사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.

1.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.
2.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0조에 따른다.

② 고흥군의회 사무과장(이하 “사무과장”이라 한다)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직제상 순서로 대리 한다.

③ 전문위원,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.

**제3조(지정대리)** 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

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
2.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·의결된 자의 경우
3.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책임)**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〔별지 제1호서식〕

# 직무대리 명령서

1. 피 대 리 직명 :

2. 대 리 자의 직위와 성명 :

3. 대리기간 :

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함.

년 월 일

고흥군의회 의장 (인)

[붙임 2]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자치법규안 내용 | 찬 성 여 부 | | 의 견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